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약관-020호(2026.02.26)

『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』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『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적금(적립식예금)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대상자 중 『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』 발급 고객에 한하며 가입자격확인서의 가입가능기간이 경과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.

1. 육/해/공군사관학교, 육군 3 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
2.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용된 부사관
3. 복무중 또는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
4. 기타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교 및 부사관

제 4 조 가입의 제한

① 이 예금은 협약된 금융기관(군인공제회 포함)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② 이 예금은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.
③ 이 예금은 장기복무 인사명령 발령 해당월 1일~12일과 그 다음월 1일~12일에 가입 가능합니다.

제 5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6 개월로 합니다.

제 6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.

제 7 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

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이며 매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.
②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입금 불가합니다.

제 8 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 9 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제 1 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9 조 우대금리

이 예금 가입 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각각 추가로 제공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대항목	내 용

군급여 이체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2/3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군급여가 입금된 경우(군급여 이체 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,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)
하나카드 결제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2/3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
마케팅 동의	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마케팅 동의 항목을 모두를 동의한 경우

제 10 조 재정지원금

① 재정지원금은 군인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며,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 60 조의 33 제 2 항에 따라 본인 납입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② 매월 납입한 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정지원금으로 적립되며, 적금을 미납할 경우 재정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③ 재정지원금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 11 조 제 1 항의 특별중도해지시 지급됩니다.

1. 예금 만기해지
2. 만기해지 시점에 『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』 원본 제출 또는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통해 재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

④ 가입자가 만기 해지 시 『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』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※ 『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』는 군인공제회의 iMND 복지포털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일 기준 국방인사정보체계상 복무정보가 정상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, 전역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

⑤ 재정지원금 지급시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재정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국방부가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

⑥ 재정지원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, 재정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관련내용은 국방부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⑦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 60 조의 33 제 4 항 및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 60 조의 33 제 5 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⑧ 이 예금 가입후 국방부를 통해 재정지원 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납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재정지원금은 국방부로 환수됩니다.

제 11 조 특별중도해지

①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 60 조의 33 제 2 항에 따라 이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, 심신장애 전역(공상), 실종선고, 포로나 행방불명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, 중도해지 가능합니다.

② 특별중도해지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유 증명서류(사망진단서, 국방부 판결서류 또는 공문)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특별중도해지시 본인 납입금과 재정지원금에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고시금리를 적용하고,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12 조 제한사항

① 이 예금은 질권설정 및 양도, 명의변경, 일부해지가 불가합니다.

② 이 예금은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.

③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신규되며,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전환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을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